

# 주류용기·주류광고
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

# 가이드라인

Guidelines on Warning Statements and Images for Alcohol Containers and Advertisements

발간등록번호

정책-03-2026-008-10



# 목차



**01**  
들어가며 4p



**02**  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 
경고그림 표시 법적 근거 5p



**03**  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 
경고그림 표시방법 해석 9p



**04**  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 
경고그림 표시방법 표준안 25p



**05**  
자주 묻는 질문 27p

## 01

## 들어가며



- 국내에서 판매·유통되는 모든 주류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 표기되어야 합니다.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(법 제1조).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목적은 과음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, 알코올로부터 청소년·임산부를 보호하는 등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특히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‘경고그림’이 도입되었고, ‘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고’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이 가이드라인은 주류용기 내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와 관련된 법령을 안내하고, 표시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- 주류업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주류를 제조·수입 시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하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## 02
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 
경고그림 표시 법적 근거

- 우리나라에서 판매·유통되는 모든 주류(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)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##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, 제6항, 제8조의2 4호

## 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 등)

- 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,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 특례)

- 4.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. 다만,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.

###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

제13조(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) 법 제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”란 국내에 판매되는 「주세법」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.

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.

###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

제4조(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)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,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
2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
3.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

② 제1항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.

###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[별표 1의2]

#### ▶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####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(제4조제2항 관련)

#### 1. 표기방법

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“경고.”라고 표시한다.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
나.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.

다.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.

#### 2. 글자 및 그림의 크기

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	글자 크기	그림 크기
300ml 이하	8pt 이상	8mm×8mm 이상
300ml 초과 500ml 이하	10pt 이상	10mm×10mm 이상
500ml 초과 1,000ml 이하	14pt 이상	12mm×12mm 이상
1,000ml 초과	16pt 이상	15mm×15mm 이상

1. 전면 코팅용기(캔류, 코팅 병 등)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.
2. 용량이 500ml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### 3. 색상

#### 가. 경고문구

- 1)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: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(補色)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- 2) 경고문구: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
#### 나. 경고그림

- 1)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: 검은색
- 2)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: 흰색
- 3)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: 빨간색

### 4. 글자체

고딕체

### 5. 표시위치



가.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.

나.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.

### 보건복지부 고시

#### [별표]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

####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(제2조 관련)

구분	경고문구	경고그림
건강상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</li> <li>•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,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.</li> <li>•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</li> </ul>	-
음주 운전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임신 중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</li> <li>•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.</li> </ul>	

- 만약, 이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제31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

# 03

##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해석



### 주류용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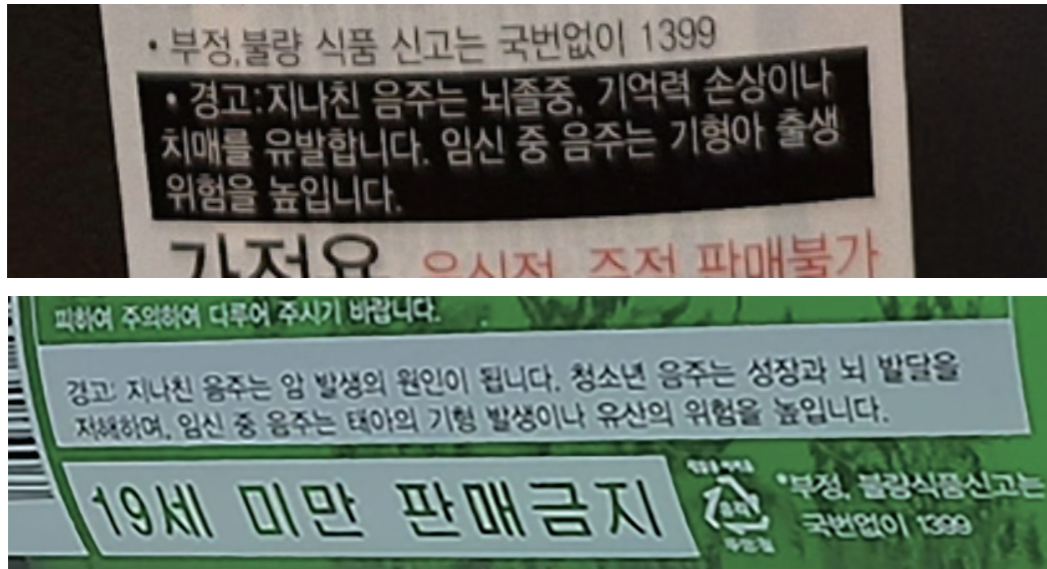
#### 1. 표기방법

- 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“경고: ”라고 표시한 다음,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- 나.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.
- 다.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.

#### ① 사각형의 선 안에 표시

- 표준대국어사전에 의하면 ‘선’은 “그어 놓은 금이나 줄”을 의미하며, 문언 해석상 ‘사각형의 선 안’이란 사각형 모양으로 그어 놓은 금이나 줄 안을 말합니다.
- 법령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주변과 구별되는 사각형의 선 안에 표시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고 기타 경고 외 내용과 명확히 구별되어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따라서 경고문구 표기 시 사각형의 명확히 구분되는 선을 활용하여 주류용기에서 제공되는 다른 정보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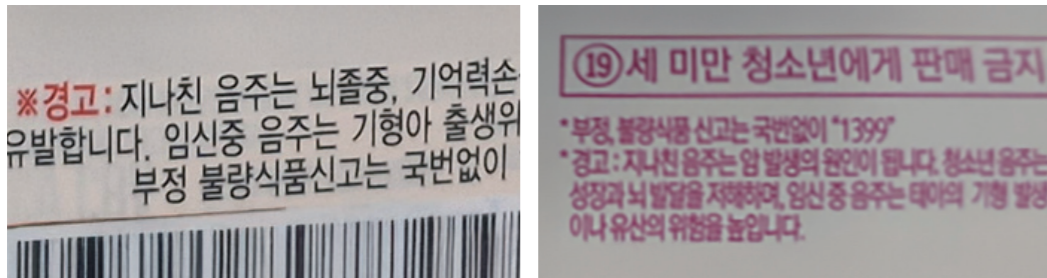
○ 「사각형 선 안에」 표기 준수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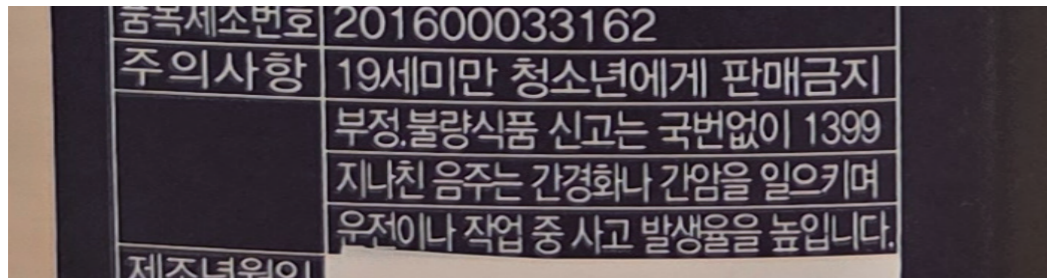
사각형 선 안에 과음 경고문구만 표기

\* 「사각형 선 안에」 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사례로 그 외의 기준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

✕ 「사각형 선 안에」 표기 미준수 사례



사각형 선 안에 경고문구 미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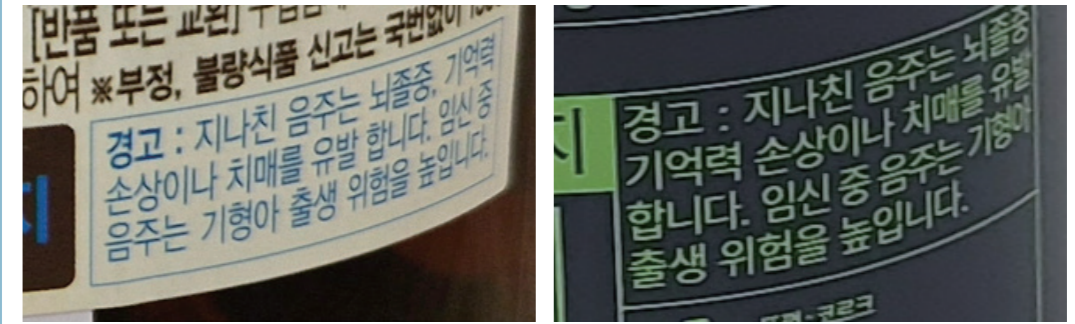


여러 개의 사각형 선 안에 경고문구 표기

② “경고:” 라고 표시

•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는 “경고:”와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. “경고”라는 문구 외에 “:”표시도 따르는 것이 법에서 제시하는 표기방법을 명확히 준수하는 방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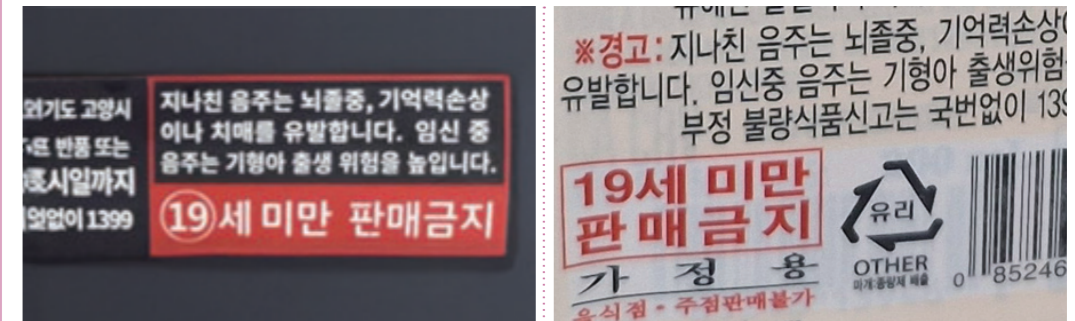
○ “경고:” 표기 후 경고문구 표시 준수 사례



“경고:” 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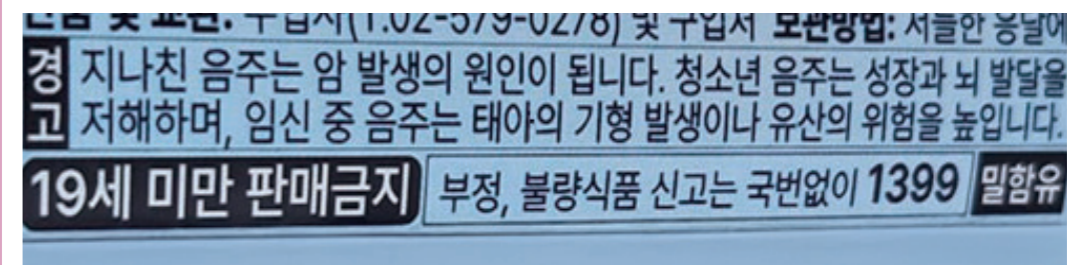
\* “경고:” 라고 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사례로 그 외의 기준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

✕ “경고:” 표기 후 경고문구 표시 미준수 사례



“경고:” 미표기

변형된 “경고:” 표기



“경고:” 오표기

###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선택하여 기재

-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-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은 ‘건강상 위험’, ‘음주운전 위험’, ‘임신 중 음주 위험’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.
- ‘건강상 위험’의 3가지 문구 중 1개 자율 선택, ‘음주운전 위험’은 경고문구 1개 또는 경고그림 중 자율 선택 가능, ‘임신 중 위험’의 경우 2개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중 1개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경고문구	경고그림
건강상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</li> <li>•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,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.</li> <li>•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</li> </ul>	-
음주 운전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임신 중 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</li> <li>•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.</li> </ul>	


#### • 경고문구로만 구성

- 용량 기준이 500ml를 초과하여 경고문구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표기


**(예)**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
#### • 경고문구 + 경고그림 구성



- 건강상 위험 + 음주운전 위험 + **경고그림** 임신 중 음주 위험

**(예)**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

- 건강상 위험 + 임신 중 음주 위험 + **경고그림** 음주운전 위험

**(예)**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 




- 건강상 위험 + **경고그림** 음주운전 위험 및 임신 중 음주 위험

**(예)**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 

### ④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

-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함께 표시할 시,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.

**○ 연속적 배치 준수 사례**

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	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
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	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

**19세 미만 판매 금지**

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

✕ 연속적 배치 미준수 사례



2. 글자 및 그림크기

2. 글자 및 그림의 크기

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	글자 크기	그림 크기
300ml 이하	8pt 이상	8mm×8mm 이상
300ml 초과 500ml 이하	10pt 이상	10mm×10mm 이상
500ml 초과 1,000ml 이하	14pt 이상	12mm×12mm 이상
1,000ml 초과	16pt 이상	15mm×15mm 이상

비고 1) 전면 코팅용기(캔류, 코팅 병 등)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.  
 2) 용량이 500ml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-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크기는 용량별 경고문구 글자 크기 기준을 세분화하고,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여 설정하였습니다.
- 특히, 경고문구로만 표시할 경우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, 300ml 이하의 경우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<글자크기 표시 사례>

팩소주 (300ml 이하)	캔맥주 (300ml 초과 500ml이하)	병소주 (300ml 초과 500ml이하)
문구 : 8pt 그림 : 8mm×8mm	문구 : 12pt 그림 : 10mm×10mm	문구 : 10pt 그림 : 10mm×10mm
		

병맥주 (500ml 초과 1,000ml 이하)	페트맥주 (1,000ml 초과)
문구 : 14pt 그림 : 12mm×12mm	문구 : 16pt 그림 : 15mm×15mm
	

### 3. 색상

#### 가. 경고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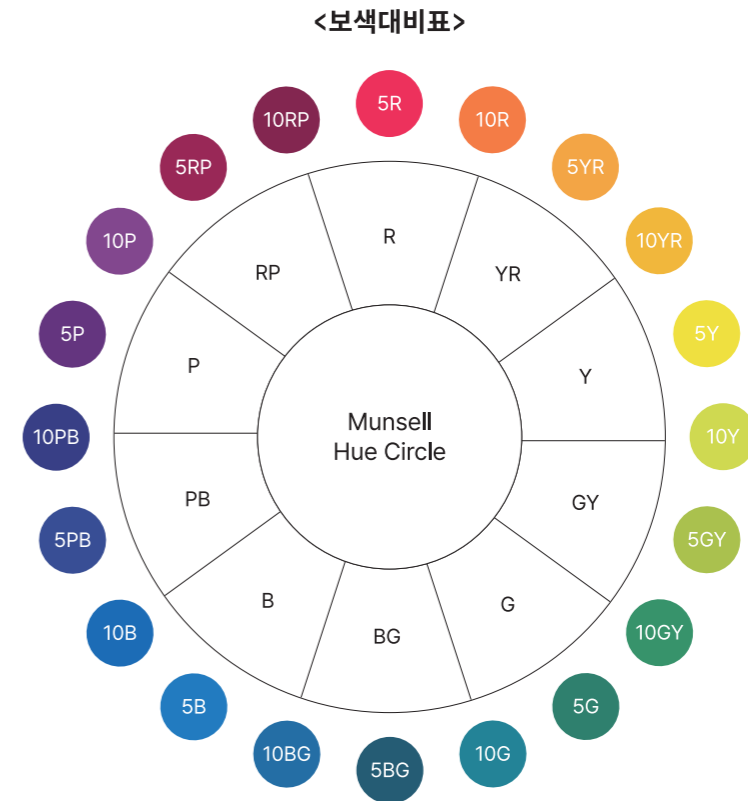
- 1)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: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(補色)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- 2) 경고문구: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
#### 나. 경고그림

- 1)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: 검은색
- 2)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: 흰색
- 3)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: 빨간색

#### ① 경고문구

- 경고문구를 둘러싼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주류용기 디자인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.
- 주류용기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색상을 기준으로 사각형 테두리 내부 색상을 판단해야 합니다.
- 경고문구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.
-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‘보색’은 “다른 색상의 두 빛깔이 섞여 하양이나 검정이 될 때, 이 두 빛깔을 서로 이르는 말”로 정의되며 “반대색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검정색, 흰색 사이의 무채색의 경우 보색관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무채색일 경우 ‘반대색’ 및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.



#### ○ 경고문구 색상 표시 준수 사례

경고: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
경고: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
보색 및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

#### ✕ 경고문구 색상 표시 미준수 사례

경고: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,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

경고문구 내부 배경색은 주류용기 디자인 색상과 보색관계/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함

## 2 경고그림

### •도안색채

구분	경고그림	
음주운전 경고그림	음주운전을 나타내는 경고그림 : 검은색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: 흰색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: 빨간색	
	음주운전을 나타내는 경고그림 : COMOYO K 100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: COMOYO KO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: COM 100Y 100 K 100	
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	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: 검은색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: 흰색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: 빨간색	
	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: COMOYO K 100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: COMOYO KO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: COM 100Y 100 K 100	

### •도안 작도요령

구분	경고그림
음주운전 경고그림	
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	

도안의 최소 크기는 8mm 이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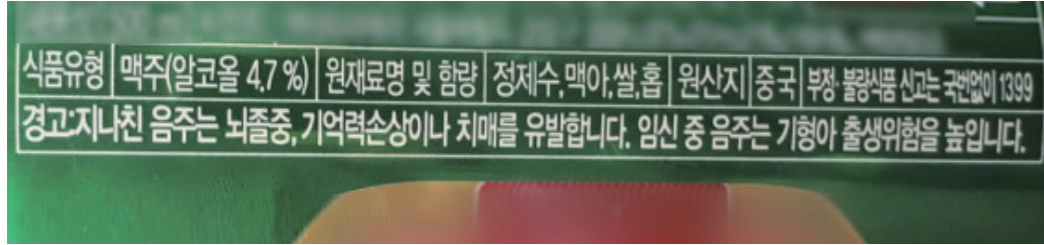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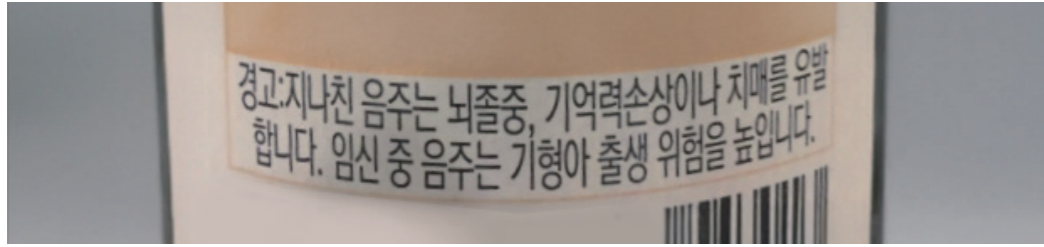
**비고** 경고그림 가로 폭은 16A로 한다.

## 4. 글자체

### 고딕체

-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선의 굵기가 일정하며 곡선이 없는 ‘고딕체’를 준수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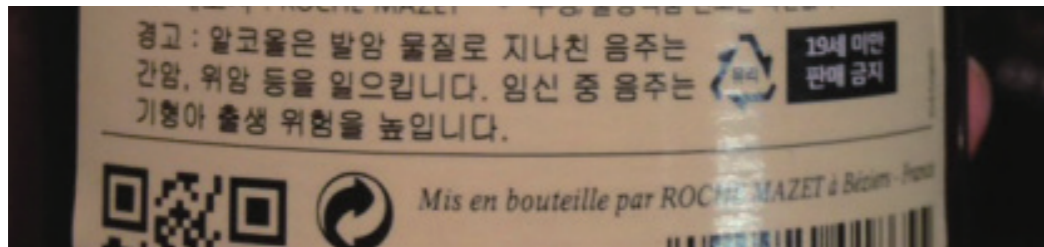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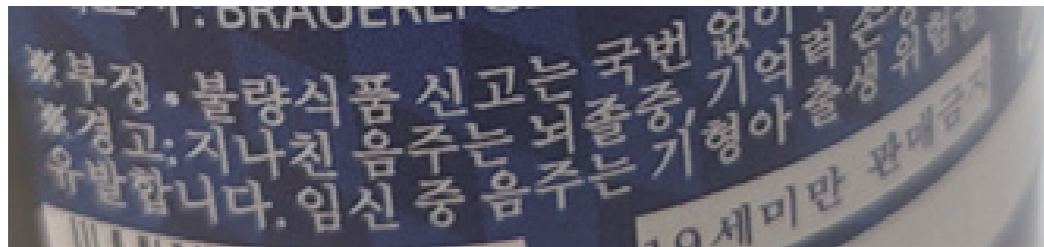
#### ○ 글자체(고딕체) 표시 준수 사례



고딕체 사용

\* 글자체(고딕체)를 준수하는 사례로 그 외의 기준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✗ 글자체(고딕체) 표시 미준수 사례



고딕체 미사용

## 5. 표시위치

-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
-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.

- 상표를 ‘기호, 문자,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’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고문구가 주로 부착되어 있는 뒷면이나 측면이 아닌 ‘주상표’를 기준으로 상표 밑, 상표 하단에 표기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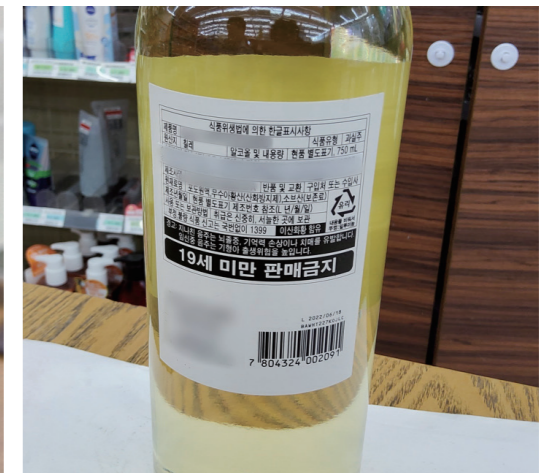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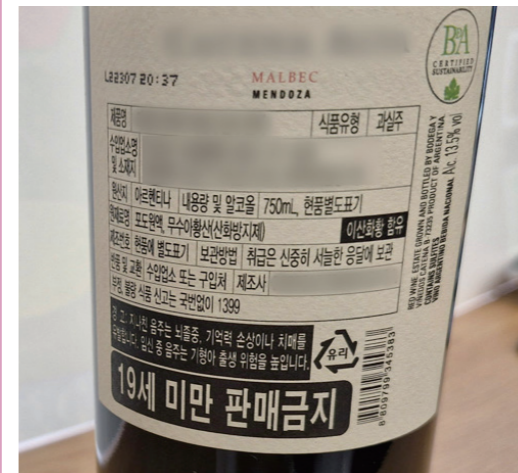
#### ○ 표시위치 준수 사례



상표 하단에 표기

\* 표시위치를 준수하는 사례로 그 외의 기준은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✗ 표시위치 미준수 사례



상표 후면에 표기

❌ 표시위치 미준수 사례



상표 측면에 표기

주류광고

- 주류광고에도 과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합니다(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).
- 단, 주류광고의 경우 특성상 별도의 글자크기, 표시위치는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표기 및 색상의 경우 준수가 필요합니다.

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 특례)

4.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. 다만,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.

<주류광고 준수 예시>

구분	참고 사진
기존	 <p data-bbox="1880 1656 2630 1673">경고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   제조사/판매사: 주류회사</p>

구분	참고 사진
<p>변경 (경고문구로만 구성)</p>	 <p>경고 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.</p>
<p>변경 (경고문구+ 경고그림)</p>	 <p>경고 :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,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 </p>

# 04

##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표준안



### 1) 주류용기: 캔

#### ① 표기방법

- 사각형 선 안, “경고:”, 문구내용

#### ② 글자크기 등

용량 기준	글자크기	그림 크기
300ml 이하	8pt 이상	8mm×8mm 이상
300ml 초과 500ml 이하	10pt 이상	10mm×10mm 이상
500ml 초과 1,000ml 이하	14pt 이상	12mm×12mm 이상
1,000ml 초과	16pt 이상	15mm×15mm 이상

#### ③ 색상

-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 :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
- 경고문구의 색상 :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

#### ④ 글자체

- 고딕체

#### ⑤ 표시위치

- 상표의 하단에 위치



# 05

## 자주 묻는 질문



### 1.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정책 관련

#### Q1. 기존 과음 경고문구가 표기된 주류는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나요?
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(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)에 따라 고시 이전에 발주·제조·수입된 주류 혹은 고시 이후 6개월 이내('26.11.9.)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는 기존 경고문구 표기하여 고시일부터 1년('27.5.8.)까지 시중 판매가 가능합니다.
- 다만, '27.5.9.부터는 기존 경고문구가 표기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이 전면 불가합니다. 따라서 해당 기한 내에 기존 재고를 모두 소진하고 변경된 문구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입: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기존 과음 경고문구가 표기된 주류는 '26.11.9.까지 수입이 완료되어야 함

#### Q2. 주류광고에 변경된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은 언제부터 적용하면 되나요?

- 주류광고에 변경된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공고('26.5.8.) 이후 6개월 이후('26.11.9.)에 적용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, '26.11.9.부터는 변경된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반영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주류광고의 변경된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은 공고일('26.5.8.)로부터 6개월 후인 '26.11.9.부터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일자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고를 시행해야 합니다.



### 2) 주류용기: 병

#### ① 표기방법

- 사각형 선 안, “경고:”, 문구내용

#### ② 글자크기 등

용량 기준	글자 크기	그림 크기
300ml 이하	8pt 이상	8mm × 8mm 이상
300ml 초과 500ml 이하	10pt 이상	10mm × 10mm 이상
500ml 초과 1,000ml 이하	14pt 이상	12mm × 12mm 이상
1,000ml 초과	16pt 이상	15mm × 15mm 이상

#### ③ 색상

-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: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
- 경고문구의 색상: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,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

#### ④ 글자체

- 고딕체

#### ⑤ 표시위치

- 상표의 하단에 위치

**Q3. 이미 소매점으로 유통된 주류용기도 회수해서 새로운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?**

- '26.11.9. 이후 제조·수입되는 제품은 개정 기준에 맞춰 표시해야 하며, 기존에 발주·제작된 제품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법은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- 유예기간 이후에는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보관 중인 재고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스티커 부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*Q4. 주류광고에 경고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?**

주류광고도 주류용기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로만 적용할 수도 있고,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조합으로 표시도 가능합니다.

**Q5.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?**

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
**2. 경고문구 표기방법**

**Q1. 전면코팅 용기(캔류, 코팅 병 등)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반드시 2포인트 이상 크게 해야 하나요?**

- 전면코팅 용기는 같은 용량이라도 다른 포장재에 비해 가독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병 표면의 색·무늬·광택 등으로 인해 글자의 대비가 떨어지고, 반사·곡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청소년보호법의 '19세 미만 판매금지' 표시기준에서도 전면코팅 용기는 글자를 2포인트 이상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경고문구로만 표기할 시에도 기존 10포인트의 경고문구를 12포인트로 작성해야 합니다.

**3. 경고그림 표기방법**

**Q1. 경고그림을 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픽토그램을 사용해도 되나요?**

경고그림을 동일하게 반복 노출함으로써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, 경고 메시지의 일관성 및 전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해외에서 표시된 경고그림을 국내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, 경고내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음주 관련 암시가 없는 임신부·자동차 운전 금지 표시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어, 고시된 경고그림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**Q2. 경고그림의 색상 규정을 완화해서 표기해도 되나요?(ex. 흑백으로 경고그림 표기)**

경고그림의 색상 규정을 표시한 이유는 경고 표시의 실효성 제고 및 의미의 전달력을 위함입니다.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컬러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흑백의 경우 경고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.

### Q3. 주상표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, 보조상표에 표기하면 안 되는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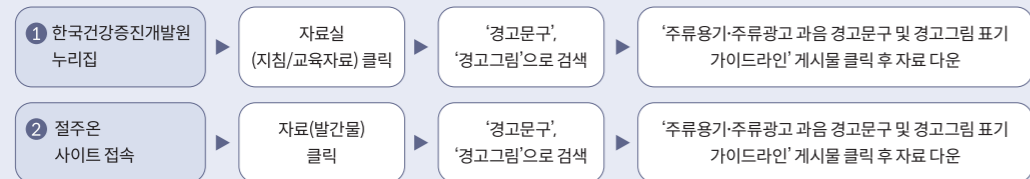
과음 경고문구의 표시위치는 현재 주류용기의 주상표를 기준으로 상표 밑 또는 상표 하단에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이는 주상표가 소비자가 주류를 선택·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부분으로서 경고문구의 가독성과 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개정 시에도 주상표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.

## 4. 기타 문의사항

### Q1. 경고그림 이미지,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
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(<https://www.khepi.or.kr/kps>), 절주온(<https://www.khepi.or.kr/alcoholstop/>)의 자료실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파일 다운 경로



### Q2. 스티커 방식 허용 가능한지?

임시조치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, 유통 및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때까지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,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 인쇄 라벨과 동일한 시각적 효과(폰트크기, 색상, 글자체)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스티커 부착은 한시적 보완책일 수 있으나, 표시의 영구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인쇄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로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주류용기·주류광고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

Guidelines on Warning Statements and Images  
for Alcohol Containers and Advertisements

발간종류	업무편람
발간번호	정책-03-2026-008-10
등록일	2026년 5월
발행일	2026년 5월
발행처	보건복지부, 한국건강증진개발원
주소	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보건복지부 (04933)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(중곡동) 보건복지행정타운 8층~10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
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www.mohw.go.kr</a> <a href="https://www.khepi.or.kr/kps">https://www.khepi.or.kr/kps</a> <a href="https://www.khepi.or.kr/alcoholstop">https://www.khepi.or.kr/alcoholstop</a>
인쇄처	디자인멘토

※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,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주류용기·주류광고

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

# 가이드라인

Guidelines on Warning Statements and Images  
for Alcohol Containers and Advertisements

